

의안번호	2202920
의 퇴 인	정일영의원
회 답 일	2024.9.20.
추계번호	24E2892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인적공제의 추가공제금액 두 배로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항목별(경로우대자, 장애인, 부녀자 및 한부모 공제) 공제금액을 두 배로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
○ 재정수입 감소는 2025년 2조 5,471억원, 2029년 2조 395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10조 2,364억원(연평균 2조 473억원)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추가공제 확대 (안 제51조제1항)	-25,471	-19,427	-17,944	-19,127	-20,395	-102,364	-20,47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51조1항 (추가공제)	○ 기본공제대상자 중 추가공제대상자의 공제금액 확대 - (현행 추가공제) 1. 70세 이상인 사람 1명당 연 100만원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3. 배우자가 없는 여성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)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,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.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- (개정안 추가공제) 1. 70세 이상인 사람 1명당 연 200만원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1명당 연 400만원 3. 배우자가 없는 여성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)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,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100만원 4.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200만원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1조1항 (추가공제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시행하며,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
 -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2024년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(징수기준)
-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감면 실적

- 2022년 근로소득자(결정세액 있는자)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규모는 각각 6.1조원, 3.6조원으로 각각 2017~2022년 동안 연평균 5.0%, 9.3% 증가

[표 2] 근로소득세 추가공제 규모 추이: 귀속연도 기준

(단위: 천명,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연평균
적용인원	3,147	3,334	3,359	3,452	3,635	3,385
(증가율)	(8.4%)	(5.9%)	(0.8%)	(2.8%)	(5.3%)	(4.6%)
공제금액	50,991	53,659	54,447	55,810	60,668	55,115
(증가율)	(7.5%)	(5.2%)	(1.5%)	(2.5%)	(8.7%)	(5.0%)

주: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

자료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3] 종합소득세 추가공제 규모 추이: 귀속연도 기준

(단위: 천명,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연평균
적용인원	2,080	2,228	2,240	2,445	2,716	2,342
(증가율)	(23.2%)	(7.1%)	(0.5%)	(9.2%)	(11.1%)	(10.0%)
공제금액	26,090	27,999	28,492	31,608	35,731	27,418
(증가율)	(13.9%)	(7.3%)	(1.8%)	(10.9%)	(13.0%)	(9.3%)

자료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□ 총급여액(종합소득금액) 규모별로 추가공제금액 인상 전/후의 1인당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, 이를 바탕으로 1인당 결정세액 감소분을 산출한 후 적용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총 세수 감소분 추계

- 총급여액(종합소득금액) 규모별 현행 1인당 과세표준에 개정안에 따른 추가공제금액 증가분을 차감하여 개정안의 과세표준 산출 후, 기본세율을 적용해 현행 및 개정안의 1인당 산출세액 산출
 - － 현행 추가공제를 적용받은 자의 소득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 분포가 국세통계연보상의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 분포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추계
- 현행 및 개정안의 1인당 산출세액에 세액공제·감면액을 반영하여 결정세액 감소분 도출 후 소득구간별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세수감소분 추계

- 개정안에 따라 1인당 추가공제금액이 증가하면 소득세 결정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추가공제 적용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계

(3) 추계 결과

-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항목별 공제금액을 두 배로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2년 기준 1조 3,31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근로소득세는 8,929억원, 종합소득세는 4,3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－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제외하여 추계

[표 4]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(근로소득세, 2022년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총급여액 규모	현행		1인당 과세표준		1인당 결정세액		결정세액 변동분 ²⁾	세수효과 (억원)
	추가공제 적용 인원 ¹⁾	추가공제 적용자 1인당 추가공제금액	현행	개정안	현행	개정안		
	A	B	C0	C1=C0-B	D0	D1	E=D1-D0	F=E×A
합계	2,886,643	1.7	-	-	-	-	-	-8,929
1천만 이하	-	-	-	-	-	-	-	-
1.5천만 이하	5,977	0.6	5.2	4.6	0.0	0.0	-0.01	-1
2천만 이하	87,145	0.8	7.2	6.4	0.1	0.0	-0.03	-23
3천만 이하	476,426	0.8	11.3	10.5	0.2	0.1	-0.03	-134
4천만 이하	376,287	1.0	17.0	16.1	0.5	0.4	-0.10	-359
4.5천만 이하	122,041	1.5	21.6	20.2	1.0	0.8	-0.16	-193
5천만 이하	115,840	1.7	24.9	23.1	1.4	1.2	-0.20	-229
6천만 이하	264,382	1.9	30.1	28.3	2.1	1.8	-0.22	-592
8천만 이하	525,356	2.1	41.2	39.1	3.6	3.3	-0.27	-1,405
1억 이하	407,132	2.3	58.2	55.9	6.7	6.2	-0.49	-1,998
2억 이하	457,723	2.4	95.8	93.5	16.4	15.6	-0.78	-3,574
3억 이하	34,387	2.3	197.4	195.1	52.9	52.0	-0.87	-299
5억 이하	10,242	2.2	327.2	325.0	102.4	101.6	-0.87	-89
10억 이하	3,098	2.1	607.2	605.1	215.8	214.9	-0.88	-27
10억 초과	607	2.0	1,964.3	1,962.3	810.7	809.8	-0.89	-5

주: 1) 결정세액이 있는 추가공제 신청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제외한 인원 추정치로, 총급여규모별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(국세청 제공)을 반영하여 추정함

2) 현행 소득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,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

자료: 국세청, 「2023 국세통계연보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5]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(종합소득세, 2022년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종합소득금액 규모	현행		1인당 과세표준		1인당 결정세액		결정세액 변동분 ²⁾	세수효과 (억원)
	추가공제 적용 인원 ¹⁾	추가공제 적용자 1인당 추가공제금액	현행	개정안	현행	개정안		
	A	B	C0	C1=C0-B	D0	D1	E=D1-D0	F=E×A
합계	2,657,902	1.3	-	-	-	-	-	-4,385
1천만 이하	832,950	0.9	2.9	2.0	0.08	0.04	-0.04	-300
2천만 이하	632,757	1.1	9.6	8.5	0.3	0.2	-0.05	-311
3.5천만 이하	497,658	1.4	19.1	17.8	0.9	0.8	-0.16	-790
4천만 이하	76,920	1.8	28.7	26.9	2.1	1.8	-0.22	-169
5천만 이하	115,284	1.8	35.3	33.4	2.9	2.7	-0.23	-268
6천만 이하	86,964	1.9	44.3	42.4	4.0	3.8	-0.25	-214
8천만 이하	126,563	2.0	57.3	55.2	6.3	5.9	-0.43	-546
1억 이하	81,034	2.1	76.6	74.5	10.3	9.9	-0.45	-365
2억 이하	139,545	2.1	121.9	119.8	23.0	22.3	-0.67	-934
3억 이하	32,465	2.0	226.8	224.8	56.0	55.3	-0.70	-227
5억 이하	20,216	2.0	361.9	360.0	101.4	100.7	-0.72	-145
7억 이하	6,737	1.9	566.8	564.9	175.3	174.6	-0.75	-51
10억 이하	4,128	1.9	804.9	803.0	262.9	262.1	-0.75	-31
10억 초과	4,681	1.8	2,532.7	2,530.9	931.1	930.3	-0.75	-35

주: 1)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추가공제 적용자 수임. 이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수를 알 수 없어 추가공제 적용자 수 전체를 대상으로 추계(2022년 귀속기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수 763.6만명)

2) 현행 소득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,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

자료: 국세청, 「2023 국세통계연보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추가공제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 ([표 2], [표 3]참조)
 - 근로소득세 5.0%, 종합소득세 9.3%
-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10조 6,798억원(연평균 1조 7,80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(소득 발생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세목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근로소득세	-9,852	-10,348	-10,870	-11,418	-11,994	-12,599	-67,082	-11,180
종합소득세	-5,239	-5,726	-6,259	-6,841	-7,478	-8,173	-39,716	-6,619
합계	-15,091	-16,075	-17,129	-18,260	-19,472	-20,772	-106,798	-17,800

- 소득세의 징주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5년 2조 5,471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10조 2,364억원(연평균 2조 47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2025년은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('25년 2월) 및 2024년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('25년 5월)로부터 발생하는 세수효과와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 동시 발생¹⁾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(징수 기준)

(단위: 억원)

세목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근로소득세	-17,613	-13,457	-11,418	-11,994	-12,599	-67,082	-13,416
종합소득세	-7,858	-5,970	-6,525	-7,132	-7,796	-35,282	-7,056
합계	-25,471	-19,427	-17,944	-19,127	-20,395	-102,364	-20,473

1)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함에 따라, 근로소득세의 경우 법 시행 첫 해인 2025년은 전년도 귀속소득분에 대한 세수효과와 당해연도 세수효과가 동시에 발생함. 다만, 2025년 2월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3월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4월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, 2025년에는 당해연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와 9/12(9개월분)가 반영되고, 나머지 3/12(3개월분)은 2025년(연말정산 시)에 반영되며, 2025년부터는 당해 귀속연도 세수효과가 전부 당해연도에 발생함. 종합소득세의 경우 당해연도에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 및 당해연도 중간예납분에 대한 세수효과를 반영함.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